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서귀포in정  
SEOGWIPO IN JEONG

---

# 2026년 3분기 '서귀포in정' 입점업체 공개모집 계획

---

2026. 6.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 1. 입점신청 안내 [입점신청 품목별 상세모집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6. 6. 10.(수) ~ 6. 26(금). \*신청 순서에 따라 입점 절차 진행
- 모집대상: 2026년 3분기 판매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산 농산물 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한 상품
  - \* 서귀포 지역 내 생산된 농가 상품을 우선으로 함
  - \* 서귀포시 주 생산품(감귤류, 애플망고, 마늘, 월동무 등)은 서귀포 지역 생산물에 한정하여 입점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① 감귤류 <https://form.naver.com/response/bciYB4EJ10fNbX2CNEAG3Q>
  - ② 기타농산물 [https://form.naver.com/response/wrbrC\\_9DyyOu2Sn67ED1vg](https://form.naver.com/response/wrbrC_9DyyOu2Sn67ED1vg)
  - ③ 수·축산물, 가공식품 <https://form.naver.com/response/o2BDgRBQLumQCCMHddJWpw>
- 문의처: (주)피터팬랩 제주지점 (064-739-9773)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064-760-2882)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타 인증 서류, 제품사진

## 2. 추진일정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 진행
- 심사 후 입점교육: 농가별 개별교육 및 필요시 집합교육 추진
- 교육내용 확인 절차(온라인) 및 참여업체 동의서 작성
- 품질검사 후 입점여부 확정
- 3PL 상차계획서 작성(통합판매 시) 혹은 물류 계획 점검(개별판매 시)
  - \* 요청한 기한 내 입점업체 동의서 및 상차계획서 미제출 시 포기로 간주
- '서귀포in정' 판매 개시
  - 개별판매: 상품페이지 제작을 위한 요청사진을 제공받은 다음 날로부터 14일(공휴일 제외) 이내 제작
    - \* 이미지가 상세페이지 제작에 부적합할 경우 작업에 늦어질 수 있음
  - 통합상세페이지 판매: 상차계획서 작성 후 판매 시작

### 3. 판매방법

#### ○ 통합판매

- (판매방식) '서귀포in정 통합상세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품질기준과 규격을 '서귀포in정'에서 결정
- (포장재, 물류) '서귀포in정' 전용 박스 사용, 3PL통합물류시스템 이용
  - \* 판매상황 등 여건에 따라 개별박스를 사용할 수 있음
- (가격, 수수료) '서귀포in정'이 공급가격(농가정산 가격)과 판매가격 결정

#### ○ 개별판매

- (판매방식) 통합 또는 입점 업체 상세페이지 제작·판매하는 방식으로, '서귀포in정' 품질기준 내에서 입점 업체가 가격과 규격 결정
- (포장재) 입점업체별로 개별박스를 사용
- (물 류) 3PL 통합물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별도 협의 필요)
- (가격·수수료) 입점 업체가 소비자가 제안(수수료: 판매금액의 7%)

### 4. 입점자 및 입점상품 조건

#### [공통사항]

-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제주도 내 농가(업체)로 서귀포시 제품 우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주원료로 해야 함
- 입점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 시 패널티 부과(재입점 시 후 순위)

#### [품목별 상세]

#### □ 농산물

#### ○ 감귤류

※법인 및 유통 사업자 입점 불가

- 아래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며,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 기준 충족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정한 상품 기준 외에 '서귀포in정' 브랜드 가치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반려될 수 있음
- 온주밀감을 제외한 모든 감귤류 품종은 시설하우스 재배 품목만 입점가능(노지 만감류 입점 불가)
- 입점 대상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본인)의 생산물에 한하며 샘플 검사 시행
  - \* 5과를 샘플 검사하여 4과 이상이 아래 기준치를 통과해야 함
  - \* 동일 세대원이나 직계가족(본인,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상품까지 허용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필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 관내 농업협동조합 유통사업소(조합공동법인 포함) 및 감귤농업협동조합
  - \* 농·감협은 전 물량 비파괴 선과기로 선별

- 입점상품 조건

- 당 · 산도(샘플검사) 및 무게기준[친환경감귤(유기농, 무농약) 포함]

구분	하우스 감귤	황금향(가온)	
당도(° Bx)	12	11 *10월이후 출하상품은 12브릭스 이상	
무게(g/1과)	53(2S) ~ 123g (2S ~ L) ※ 2L 판매 불가	선물용	187~280g
		실속형	166~187g
산도(%)	1.1 이하		

- \* 입점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감귤류는 내부 검토 후 결정
- \* 과원 전체에 대한 평균 당산도 검사를 진행하며, 일부 구획에 한정해 입점을 희망할 때에는 과원 및 수확물 보관 장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애플망고

※법인 및 유통 사업자 입점 불가

- 농업인, 농 · 감협
- 당도 15브릭스 이상 · 산도 0.6% 이하
- 외관상 문제가 없고 착색이 80% 이상 진행 후 수확한 상품
- 330g/1과 이상의 상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그 미만의 상품은 서귀포시와 협의 후 별도 표기해 판매할 수 있음

○ 샤인머스켓

- 입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 · 감협, 농산물 판매자

구분	당도	무게(g/송이)		산도
		선물형	실속형	
샤인머스켓	18° Bx 이상	800~600	600~450	0.6%이하

- 낱알의 무게 18g ± 4g, 크기 25mmn 내외 ※ 품종 고유의 색택이 고르게 착색
- 외관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균일해야 함.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낱알의 밀착도가 성긴 것 등 결점과

## ○ 기타 농산물

- 입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감협, 농산물 판매자
- 품질 등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 무농약) 우선 판매

## □ 농수축산 가공식품

※주재료가 제주산이 아닌 경우 입점 불가

○ 입점대상: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중 아래 3개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① 우수제품 품질인증(JQ) 보유 업체
- ②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제외
  - 주재료가 제주산이여 함
  - 현장 실사 결과 위생 관리 등 식품 안정성을 점검하여 결정
- ③ 가공업 혹은 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판매업 등) 영업 신고를 한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은 제조 업체을 통한 위탁생산 한 경우
  - 주재료가 제주산이여 함

※ 서귀포시에서 위생, 품질, 행정처분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점 제외할 수 있음

※ 축산물은 HACCP인증을 필수로 함

※ JQ인증 업체는 입점 및 기획전에서 우대함

## 5. 정산

○ 매월 마감 정산 후 익월 20일 지급

\* (개별 판매) 수수료 7% 제외 후 금액 지급

\* 1kg당 납품단가를 정한 통합 판매 방식은 별도 수수료 없음

\* 초과 수수료가 발생하는 제휴 채널 프로모션 시에는 협의를 통해 진행

## 6. 퇴점 등 제재 사유 및 처분

○ 즉시 퇴점 및 영구 입점 금지(필요시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고발 처분)

-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PLS위반 등)
- 서귀포시에서 품질검사 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발송한 경우(입점 검사 필지 외 농산물 판매 등)

- 상품배송을 위한 정보를 폐기치 않고 홍보 등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즉시 퇴점 및 3년간 재입점 금지

- 상품 정보 및 입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서귀포시 혹은 수탁 운영사가 모집 계획, 교육자료, 농가 안내문 등을 통하여 명시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을 출하하고, 서귀포시의 후속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즉시 퇴점 및 1년간 재입점 금지

- 서귀포시 혹은 수탁 운영사가 모집 계획, 교육자료, 농가 안내문 등을 통하여 명시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 상품 검수 중이나 고객 c/s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사안이 경미할 경우 1회 경고 조치)
- 기타 상품의 명확한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규정된 경고 횟수를 초과한 경우

※ 경고조치

- 수탁 운영사의 송장 정보 요청에 대해 3시간 이내 답변을 주지 않은 경우 (경고횟수: 1회)
-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문제(포장 실수 등) 발생 (경고횟수: 1회)
- \* 재발송 혹은 환불 등 서귀포시에서 지시한 사항을 거부한 경우 (즉시퇴점)
- 수량이 없음에도 공지를 하지 않아 배송의 차질을 유발한 경우 (경고횟수: 2회)
- 발주한 주문 건에 대해 1일 이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횟수: 1회)
- 정보의 제공 요청, 출하 관련 사항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귀포시와 수탁 영사의 요청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경고횟수: 1회)

○ 3PL통합물류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서귀포시와 '서귀포in정' 수탁운영사가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입고 후 15일 이내 부패 등 변질이 발생 한 경우는 입점업체의 과실로 함 이때, 부패상품에 대한 정산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입점업체가 희망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택배 등을 통해 회수 할 수 있음(물류비 입점 업체 부담)
- 상품 보관 중(입고 후 15일 이내) 발생한 부패 등 변질된 상품의 비율 이나(저온창고 내 상품 개봉으로 확인), 고객의 C/S 비율(부패로 인함)이 5%를 초과할 경우 제품 전체를 사업장으로 반품 조치 함

- 부패로 인한 폐기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입점 업체 부담으로 처리함

## 7. 기타사항

- 위탁 운영사가 요청한 상품사진의 기간내 미 제공 시 입점 취소
- 특판이나 폐쇄몰 등 타 채널 연동 판매 시에는 협의하여 가격 변동 가능
-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혹은 (주)피터팬랩에서 필요 조치를 할 수 있음. ※상품 품질이나 배송관리 상태 상시 점검

## 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 입점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본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서귀포시청,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신청자 선정 및 관리
- 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 입점상품 안정성 관리

☐ 개인정보수집항목

- 농가(업체) 기본사항
  - 농가(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 소재지, 성명(대표자명), 연락처
- 농가(업체)의 영업에 관한 사항
  - 사업자등록사항, 법인설립사항
  - 각종 인증 및 마케팅 현황

☐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 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 입점 기간 내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내용

- 서귀포시,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 농가(업체) 기본사항, 농가(업체) 영업에 관한 사항
- 소비자 : 농가(업체)명, 생산일, 입점상품에 관한 사항, 반품을 위한 연락처 및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 입점신청” 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귀포in정 입점업체 관리규정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이하 '서귀포in정' 이라 한다.)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 상에서 "입점농가(업체)"가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1조 【업무의 범위】

1. '서귀포in정'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 상에서 고객과 "입점농가(업체)" 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청" 과 위탁운영사 "(주)피터팬랩"이 제공하는 서비스
2. "서귀포시"가 제공하는 판매 관련 서비스는 "입점농가(업체)"가 판매하는 거래에 한정한다.
3. "서귀포시"와 "입점농가(업체)"간의 합의에 따른 추가서비스

### 제2조 【판매 방법】

1. "입점농가(업체)"는 '서귀포in정' 으로부터 결제된 주문정보를 확인 후 상품 및 서비스를 발송하고 발송완료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입점농가(업체)"는 발송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하며 이의 위반이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점농가(업체)"에 있다.
2. '서귀포in정'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 상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책임은 "(주)피터팬랩"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입점농가(업체)"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 제공방법, 사진, A/S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 【대금결제 방법】

1. "입점농가(업체)"는 '서귀포in정' 에서 결제된 주문정보에 의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의 대금을 '서귀포in정' 쇼핑몰 운영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2. "입점농가(업체)"에 결제금액을 정산하는 근거는 '서귀포in정' 으로부터 결제된 주문정보에 의해 "입점농가(업체)"에서 발송한 발송정보로 한다. 발송사실 통보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입점농가(업체)"에 있다.
3. 결제주기는 월 1회(1일~월말 판매금액을 영업일 기준 다음달 20일)로 한다.
4. 결제금액은 정산 수수료(카드결제 수수료 포함) 7%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납품가를 정한 거래(수수료 없음)를 할 수 있다.
5. 정산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익월 8일 이전까지 발행 하도록 한다.(월 1회)

### 제4조 【구매취소 및 교환·환불】

1. 상품 구매 취소 요청이 발생할 경우, '서귀포in정' 쇼핑몰 운영센터는 즉시 "입점농가(업체)"에 상품발송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고객의 결제방법(신용카드, 가상계좌, 즉시이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즉시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 (1)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승인 취소 처리
  - (2) 가상계좌, 즉시이체 : 판매대금 정산계좌에서 환불금액 이체 후 지급확인서를 3년간 보관, 이 경우 신속한 환불 조치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계좌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품의 불량, 하자 등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 "입점농가(업체)"는 고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환, 환불의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점농가(업체)"의 책임 하에 동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고객의 클레임 발생시 '서귀포in정' 쇼핑몰 운영센터는 동 분쟁의 해결 시까지 해당 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3. 위 2항에 따라 고객의 책임이 아닌 경우의 하자에 대하여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및 교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점농가(업체)"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반송료 등의 비용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배송중의 박스파손 배송지연은 택배사의 책임이며, 오류발송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5조 【역할】

1.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서귀포시" 및 서귀포in정 운영 대행사 (주)피터팬랩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연중 무휴 1일 24시간 판매대행 서비스 제공  
단,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일시 중지는 가능
  - (2) 기타 "서귀포시", "입점농가(업체)" 양자가 합의한 사항
2.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입점농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입점농가(업체)"는 온라인 판매대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2) 허위사실이나 과장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상품정보만을 제공
  - (3) "입점농가(업체)"는 인터넷 마켓을 통한 주문내역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의 즉시 발송 책임
  - (4)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의 보증과 상품 자체에 대한 클레임(판매권, 의장권 등의 침해에 대한 클레임 포함)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 책임
  - (5) 온라인 판매 서비스 상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책임
3. "입점농가(업체)"는 판매상품의 각종 인증관련서류( G마크 인증, HACCP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제시와 인증적용기준, 인증기간, 제품의 원산지, 원재료 함량, 성분 표기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점농가(업체)"에 전적으로 귀속된다.

#### 제6조 【특약】

1. '서귀포 in정' 브랜드명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해 제작된 이미지 등 디자인 전체는 사용 불가하며 입점 업체에서 이미지의 사용 시에는 반드시 "서귀포시(서귀포in정)"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브랜드명 및 이미지 도용행위 그리고 제3자의 도용에 대한 묵과행위에 대해서도 "입점농가(업체)"는 도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2. 그 외에 서로 양자간 선량한 거래상의 신뢰와 관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한다.

#### 제7조 【손해배상】

1. 운영지침에 의한 판매대행서비스 제공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주)피터팬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고객의 이의제기(본인사용 부인 또는 금액상이, 파손 등) 시 "입점농가(업체)"는 자신의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제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경우, 분쟁의 해결 시까지 (주)피터팬랩은 "입점농가(업체)"에게 해당 결제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지급된 때에는 "서귀포시" 혹은 (주)피터팬랩은 즉시 정산을 요청하거나 차기 대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입점 기간】

입점 기간은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한, 해당년도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입점기간 만료 7일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판매기간이 정해져있는 농산물의 경우 제품이 품질된 날을 퇴점일로 하며, 추후 입점 시 입점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 제9조 【입점업체의 퇴점 사유】

1.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즉시 퇴점 · 영구 입점금지 조치를 하며, 행정 처분 및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취함. 필요 시 판매대금 전액 혹은 일부를 고객 환불조치
  - (1)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PLS위반 등)
  - (2) 서귀포시에서 품질검사 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발송한 경우(입점 검사 필지 외 농산물 판매 등)
  - (3) 상품배송을 위한 정보를 폐기치 않고 홍보 등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점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점업체는 3년내 재입점을 금지한다.
  - (1) 상품정보 및 입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서귀포시 혹은 수탁운영사가 모집계획, 교육자료, 농가안내문 등을 통하여 명시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을 출하하고, 서귀포시에 후속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조치사항 이행시 경고조치 혹은 1년간 재입점 금지)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점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점업체는 1년내 재입점을 금지한다.
  - (1) 서귀포시 혹은 수탁운영사가 모집계획, 교육자료, 농가안내문 등을 통하여 명시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을 상품 검수중이나, 고객 c/s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사안이 경미할 경우 1회 경고조치)
  - (2) 기타 상품의 명확한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3) 규정된 경고 횟수를 초과한 경우
    - < 경고 조치 >
    - (가) 수탁 운영사가 송장정보를 요청에 대해 3시간 이내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경고횟수: 1회)
    - (나)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문제(포장 실수 등) 발생 (경고횟수: 1회)  
\*재발송 혹은 환불 등 서귀포시에서 이행 지시한 사항을 거부할 경우(즉시퇴점)
    - (다) 수량이 없음에도 공지를 하지 않아 배송의 차질이 생길 경우(경고횟수: 2회)
    - (라) 발주한 주문 건에 대해 1일 이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고횟수: 1회)
    - (마) 정보의 제공 요청, 출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귀포시와 수탁 운영사의 요청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경고횟수: 1회)

4.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점조치를 하며, 추후 신청서 제출 후 재입점이 가능함.
  - (1) 입점 월로부터 최근 1년간 상품 판매 등의 쇼핑몰 운영 활동이 없는 경우.
  - (2) 판매시기가 정해진 농산물의 판매가 종료 된 경우.
  - (3) 판매자의 개별 사정으로 인해 판매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 【입점조건 및 절차】**

' 서귀포in정 ' 의 입점조건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입점조건은 입점농가 모집 공고상의 입점기준 내용과 같다.
2. 입점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후 신청자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하여 상품입점을 하며, 입점 신청 시, "입점농가(업체)"는 입점상품기술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장사본, 제품사진 및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한 설명을 제공 하여야 한다.
3. 입점요건 확인 및 판매준비에 추가자료가 필요할 경우, 서귀포시에 요청에 응해야 한다.

-----

본인(당사)는 상기 운영 지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만약 본인(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운영 지침을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제18조제4항 관련)

### □ 온주밀감

구 분	상 품 기 준					
과일의 크 기	○ 온주밀감의 상품 규격은 과일의 크기가 횡경 49밀리미터 이상 70밀리미터 이하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3그램 이상 135그램 이하로 한다.					
	구 분	2S	S	M	L	2L
	규격 (밀리미터)	49 이상 ~53 이하	54 이상 ~58 이하	59 이상 ~62 이하	63 이상 ~66 이하	67 이상 ~70 이하
	무게 (그램)	53 이상 ~62 이하	63 이상 ~82 이하	83 이상 ~106 이하	107 이상 ~123 이하	124 이상 ~135 이하
당 도	○ 하우스시설 및 월동비가림 온주밀감: 당도 10.0브릭스(Brix) 이상 ○ 노지 극조생 온주밀감: 당도 8.5브릭스(Brix) 이상 ○ 노지 조생 및 보통 온주밀감: 당도 9.0브릭스(Brix) 이상					
껍질튼 정 도	○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튼 정도가 껍질 내 표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간 정도 이하)인 것					
결점과의 정 도	○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을 것					
※ 위 상품 규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도지사 고시한 당도 10브릭스(Brix)이상인 온주밀감은 상품으로 본다.						

### □ 만감류

구 분	상 품 기 준
당도 및 산 함량	○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 (황금향) - 당도 10.0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0퍼센트 이하
껍질튼 정 도	○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튼 정도가 껍질 내 표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간 정도 이하)인 것
결점과의 정 도	○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을 것
※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품종별 전체 재배면적이 100ha 이상 재배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 비 고 >

1. 중결점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품종과: 품종이 다른 것

나. 부패, 변질과: 과피 및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 또는 언 피해로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다. 미숙과: 당도로 보아 성숙이 덜된 것(감귤을 화학약품 또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후숙·강제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라. 일소과: 지름 또는 길이 1.0센티미터 이상의 햇빛에 데인 피해가 있는 것

마. 병충해과: 병해충(더듬이병, 궤양병, 검은점무늬병, 곰팡이병, 깍지벌레, 으름밤나방 등)의 피해가 과육에 까지 미친 것, 또는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으로 외관이 불량한 것

바. 상해과: 열상, 자상, 타상 및 압상이 있는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사. 그 밖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과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2. 경결점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형상이 불량하거나 가벼운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나. 병충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다.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라. 그 밖에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